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8

서울지방법원

2002. 5. 7. 판결선고

인

2002. 5. 7. 원본영수

판결

사 건 2000가단148293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02. 4. 9.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 F에게 각각 돈 500,000원,

나. 원고 B, D, E에게 각각 돈 700,000원,

다. 원고 C, G에게 각각 돈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0. 4. 13.부터 2002. 5.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3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0. 4. 13.부터 2000.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

① 위 원고는 1997. 10. 27. 안양시 만안구 H빌라11차 비동 02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② 위 원고는 사기죄로 공소 제기되어 1999.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결과 1999. 5. 20. 같은 법원에서 징역 2월, 징역 8월 선고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1999. 9. 30. 만기출소 하였다.

③ 그런데, 수원지방법검찰청은 1999. 9. 4.경 위 원고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전북 김제군 용지면장에게 ‘선고 : 1999. 5. 20. 수원지방법원, 형명·형기 : 징역 2월, 징역 8월, 집행종료예정일 : 2000. 6. 4.’이라고 잘못 기재한 위 원고에 관한 수형인명표를 송



부하였고(그 후 위 검찰청은 2000. 4. 초경 '집행종료예정일 : 1999. 9. 30.'이라고 정정 기재한, 위 원고에 관한 수형인명표를 송부하였다.), 그 후 용지면장은 2000. 4. 13. 실시될 예정인 제16대 국회의원선거(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선거'라고만 한다.)를 위해, 2000. 3. 경 안양시 만안구의 선거담당공무원에게 위 원고에 대한 형의 집행종료예정일이 2000. 6. 4. 이어서 위 원고는 선거권이 없다는 취지의 선거권이 없는 자 명단을 보냈고, 이에 따라 위 원고는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었다.

④ 위 원고는 2000. 3. 말경 이 사건 선거에 관한 투표안내문이 송달되지 않자, 위 만안구 석수동 사무소에 문의하여 담당자로부터 위 원고는 2000. 6. 4. 까지 집행유예기간이어서 선거권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위 원고는 위 용지면 사무소, 수원지방법 검찰청, 서울지방법검찰청 등에 항의하였으나 전산입력 과정에 실수가 있다는 간단한 답변만 받았으며, 그리하여 위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사돈 식구들이 위 원고의 위 전과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원고 B

① 위 원고는 1999. 12. 27. 고양시 일산구 I 213동 301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② 위 원고는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공소 제기되어 1999.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1999. 8. 15. 특별사면·복권 되었다.

③ 그런데, 서울지방법검찰청은 1999. 12. 8. 위 원고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경남 하동읍장에게 '선고 : 1999. 6. 11. 서울고등법원, 형명·형기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집행종료예정일 : 2000. 6. 18.'이라고 잘못 기재한 위 원고에 관한 수형인명표를 송부하였고(그 후 위 검찰청은 2001. 8. 20.에야 하동읍장에게 위 원고가 특



별사면 되었으므로 수형사실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 후 하동읍장은 이 사건 선거를 위해 2000. 3.경 고양시 일산구의 선거담당공무원에게 위 원고에 대한 형의 집행종료예정일이 2000. 6. 18.이어서 위 원고는 선거권이 없다는 취지의 선거권이 없는 자 명단을 보냈고, 이에 따라 위 원고는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었다.

④ 위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이 사건 선거 당일 투표를 하기 위하여 투표소가 설치된 위 장항동 사무소에 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수령하려 하였으나 그 위원은 다른 투표자들이 있는 가운데 위 원고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다고 하였고, 이에 위 원고가 다른 담당자에게 항의하자 그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다음 전과기록에 따라 형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 것 같다고 말하였으며, 결국 위 원고는 투표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3) 원고 C

① 위 원고는 1999. 10. 7. 수원시 장안구 J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② 위 원고는 위조외국통화수입 등 죄로 공소 제기되어 1998. 11.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결과 1999.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99. 6. 25.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③ 그런데, 서울지방검찰청은 2000. 1. 26.경 위 원고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선고 : 1998. 11. 27. 서울지방법원, 형명·형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집행종료예정일 : 2001. 6. 24.’이라고 잘못 기재한 수형인명표를 송부하였고



(그 후 위 검찰청은 2000. 4. 7.에야 관악구청장에게 위 원고에 관한 수형인명표가 전산 착오로 잘못되었으므로 정정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 후 관악구청장은 이 사건 선거를 위해 2000. 3. 14. 수원시 장안구의 선거담당공무원에게 위 원고에 대한 형의 집행종료예정일이 2001. 6. 24.이어서 위 원고는 선거권이 없다는 취지의 선거권이 없는 자 명단을 보냈고, 이에 따라 위 원고는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었다.

④ 위 원고는 2000. 3. 30.경 집으로 송달된 이 사건 선거에 관한 투표안내문을 보고 자신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고, 위 파장동 사무소에 문의하여 담당자로부터 위 원고는 2000. 6. 24.까지 집행유예기간이어서 선거권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위 원고는 관악구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항의하였으나 ‘전산입력 과정에 실수가 있으니 정정하겠다.’는 간단한 답변만 받았으며, 결국 위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하였다.

(4) 원고 D

① 위 원고는 1998. 10. 28. 상주시 K아파트 202동 1007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② 위 원고는 살인죄로 공소 제기되어 1978. 3.경 대구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한 결과 1978. 6. 9.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복역하다가 1997. 5. 17. 가석방되었고 1998. 3. 13. 20년으로 감형되었으며 1998. 6. 2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③ 그런데,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1978.경 위 원고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상주시 공검면장에게 ‘선고 : 1978. 2.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명·형기 : 무기징역’이라고 기재한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후 제때에 위 특별사면·복권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위 검찰청은 2000. 8.경에야 공검면장에게 위 특별사면·복권 사실을 통지하였다.),



공검면장은 이 사건 선거를 위해 2000. 3.경 상주시의 선거담당공무원에게 위 원고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아 선거권이 없다는 취지의 선거권이 없는 자 명단을 보냈고, 이에 따라 위 원고는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었다.

④ 위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이 사건 선거 당일 투표를 하기 위하여 투표소로 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수령하려 하였으나 그 위원은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위 원고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다고 하였고, 이에 위 원고는 담당자에게 항의하다가 결국 투표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5) 원고 E

① 위 원고는 1999. 2. 1.경 여수시 L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② 위 원고는 살인미수죄로 공소 제기되어 1969.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항소한 결과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1970. 4. 28.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복역하다가 1984. 5. 8.경 가석방 되었고 1998. 3. 13. 20년으로 감형되었으며 1994. 5. 7.경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③ 그런데, 광주지방법검찰청 순천지청은 1970.경 위 원고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여수시 해룡면장에게 ‘선고 : 1969.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명·형기 : 무기징역’이라고 기재한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이후 제때에 위 특별사면·복권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위 해룡면장은 이 사건 선거를 위해 2000. 3.경 여수시의 선거담당공무원에게 위 원고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아 선거권이 없다는 취지의 선거권이 없는 자 명단을 보냈고, 이에 따라 위 원고는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었다.



④ 위 원고는 2000. 4. 8.경 집으로 송달된 이 사건 선거에 관한 투표안내문을 보고 자신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고, 위 만흥동 사무소에 문의하여 담당자로부터 '무기수는 형 종료일이 없어 지금 형 집행 중이므로 선거권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그 후 이 해통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항의하기도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선거 당일 투표를 하기 위하여 투표소로 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수령하려 하였으나 담당자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다고 하여 항의하자, 담당자는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선거권이 없는 자 명단을 보여주면서 '법에 따라 투표권이 없다.'고 하였으며, 결국 위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하였다.

(6) 원고 F

① 위 원고는 2000. 3. 14. 원주시 M아파트 102동 1409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② 위 원고는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공소 제기되어 1998. 8.경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1999. 8. 15. 특별사면·복권 되었다.

③ 춘천지방검찰청은 1998. 8.경 위 원고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게 위 원고에 관한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후 1999. 8. 30.경 위 특별사면·복권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중랑구청장은 이 사건 선거를 위해 2000. 3.경 중랑구 신내동(당시 위 원고의 주소지) 동장에게 사무착오로 위 원고가 선거권이 없다고 통보하였고, 그 후 신내동장은 다시 원주시의 선거담당공무원에게 위 원고는 선거권이 없다는 취지의 선거권이 없는 자 명단을 보냈고, 이에 따라 위 원고는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었다.

④ 위 원고는 2000. 4. 8.경 집으로 송달된 이 사건 선거에 관한 투표안내문을 보



고 자신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고, 위 일산동 사무소 등에 항의하였으나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다.'는 간단한 답변만 받았으며, 결국 위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하였다.

(7) 원고 G

① 위 원고는 1985. 11. 12. 서울 중랑구 N 비동 1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② 위 원고는 변호사법위반죄로 공소 제기되어 1997. 10. 2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결과 1998. 2. 10. 서울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99. 11. 12.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③ 그런데,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은 2000. 1. 6. 위 원고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충남 금산군 진산면장에게 '선고 : 1997. 10. 2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형명·형기 : 징역 1년, 집행종료예정일 : 2000. 7. 15.'이라고 잘못 기재한 수형인명표를 송부하였고 (그 후 위 검찰청은 2000. 4. 7.에야 진산면장에게 위 원고에 관한 수형인명표가 전산착오로 잘못되었으므로 정정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 후 진산면장은 이 사건 선거를 위해 2000. 3.경 중랑구의 선거담당공무원에게 위 원고에 대한 형의 집행종료예정일이 2000. 7. 15.이어서 위 원고는 선거권이 없다는 취지의 선거권이 없는 자명단을 보냈고, 이에 따라 위 원고는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었다.

④ 위 원고는 2000. 4.초경 집으로 송달된 이 사건 선거에 관한 투표안내문을 보고 자신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고, 위 면목동 사무소 등에 항의하였으나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다.'는 간단한 답변만 받았으며, 결국 위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3,4,5,6,7,8,9,10,11,12,1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장, 수원지방검찰청장, 서울지방검찰청장,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춘천지방검찰청장,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1) 손해배상 의무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형의실효등에관한 법률은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법 3조),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사면·감형·복권이 있을 때 등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4조)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형사사건을 담당한 피고 산하 검찰청 소속공무원은, ① 원고 A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후 만기출소 하였음에도 아직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송부하거나, ② 원고 B이 특별사면·복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다시 종전 내용의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송부하거나, ③ 원고 C, G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여 무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1심에서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송부하거나, ④ 원고 D, E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감형되었음에도 제때에 본적지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⑤ 원고 F의 본적지 관서 공무원은 검찰청으로부터 위 원



고의 특별사면·복권 사실을 통지 받았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위 원고를 선거권이 없는 자 명단에 포함시킨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잘못 알려지거나 과거의 전과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쟁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정당한 작성권자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선거인명부 확정 전에 정당한 선거권자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인명부 열람·공람, 이의신청, 불복신청, 명부누락자 구제 등의 절차를 밟을 기회를 제공하였던 점, 그럼에도 원고들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이 사건 선거 전 전체 선거권자의 10%인 3,476,887명이 선거인명부를 열람·공람하여 그 중 675명의 명부누락자가 구제되었음.), 선거인 수에 비하여 너무나 짧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여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선거인명부에 기재가 누락된 것만으로는 선거권의 침해가 없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선거 담당공무원들이 2000. 3. 27.부터 2000. 3. 29.까지 원고들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선거권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공람하게 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이 위 기간동안 선거인명부를 열람 또는 공람하지 아니하여 자



신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사실, 그로 인해 원고들은 이의신청 등 자신이 누락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 결국 선거권을 상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잘못은 피고를 면책시킬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원고들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뒤에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연령, 직업 및 사회적 지위, 위 불법행위의 태양 및 정도, 원고들에 대한 형사판결의 내용, 투표 참석 여부, 선거인명부를 열람 또는 공람하지 아니한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 A, F에게는 각각 50만원, 원고 B, D, E에게는 각각 70만원, 원고 C, G에게는 각각 100만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피고는, 원고 A, F에게 각각 위자료 50만원, 원고 B, D, E에게 각각 위자료 70만원, 원고 C, G에게 각각 위자료 100만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0. 4. 13.(이 사건 선거일)부터 2002. 5. 7.(선고일;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됨.)까지는 연 5%(민법이 정한 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8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

2002. 5. 7.

판사 홍진호 _____